

제245회 영등포구의회
2023년도 제1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【이순우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3. 6. 19.

運 營 委 員 會
專 門 委 員 金 玉 然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158호로 2023년 5월 26일 이순우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특별위원회위원장 및 인사위원회위원장 직인을 조례에 신설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인 관리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영등포구의회 공인에 특별위원회위원장, 인사위원회위원장 직인 추가(안 제2조)
- 나.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규정 신설(안 제5조의2)
- 다. 준용규정 신설(안 제14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.
- 다. 입법예고: 생략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특별위원회위원장 및 인사위원회위원장 직인을 조례에 추가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공인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,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(공인의 종류)에서는 직인의 종류에 “특별위원장인”과 “인사위원장인”을 추가함.
- 안 제5조의2(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)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려는 경우 전자이미지 등록대장에 등록하도록 하고, 전자이미지 공인의 위조 등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함.
- 현 조례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(준용규정)로 이동하고 준용규정을 현행의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에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」으로 변경함. 이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의 개정(시행. 2020.12.03.)으로 공인과 관련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준용규정을 변경한 것임.
- 또한, 안 제14조(준용규정)에서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등을 준용하도록 함.

○ 검토 결과

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4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본 개정조례안은 이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를 추가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 및 준용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 조례의 현행화를 위하여 필요한 개정으로 사료됨.

참 고 자 료

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

제40조(공인)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(公印)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